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2022나2027350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1. 1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0가합80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0,851,025원 및 이에 대해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2행, 7쪽 18행, 8쪽 15, 18행의 각 “J”을 각 “U”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5행의 “피고가”부터 6행의 “감액되어야 한다”까지를 “피고가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752,400,000원(= 684,000,000원 + 부가가치세 68,400,000원)이 된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9행의 “17,556,550원”을 “15,960,450원”으로 수정한다. 1) ○ 제1심판결문 11쪽 19행의 “이 사건 E동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 사건 E동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4쪽 18행의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를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5쪽 11행의 “이 사건 F동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 사건 F동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으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2022. 11. 15. 변론종결 후의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항소 제기 이후 2022. 7. 25.자 석명준비명령을 수령하고서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신청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는바,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오영상, 판사 최항석, 판사 공도일

1) 해당 부분의 다른 금액이 모두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므로 위 총고 감소 부분의 금액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수정한다.